

II 2021 학부모 아동학대(가정폭력) 예방교육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에 의거하여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 초·중·고등학교의 장은 학생(필수) 및 학부모(선택)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, 가정내 학대를 방지하고,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.

1.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의 정의

√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. (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)

아동학대란? (아동복지법 제32조제7항)

-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.

아동학대범죄란? (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항)

-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함.
- 형법상 범죄(상해, 폭행, 유기, 학대, 체포, 강간, 강요, 재물손괴 등), 복지법상 범죄(신체, 정서, 성, 방임)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,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(아동학대치사, 중상해, 상습범)

아동학대행위 = 처벌(범죄자) ??



➡ 정도나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 아동학대는 처벌 대상이 될 수도, 상담/교육 대상이 될 수도 있음.

2.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

가. 신체학대

신체학대

-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
-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,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,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,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등



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처벌

처벌법상 상해, 폭행, 특수폭행, 폭행치상 등으로 처리 가능함. 특히 아동학대치사 시, 무기징역 및 5년 이상 징역에 처함.

나. 정서학대

정서학대

-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, 정서적 위협,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
- 언어적 폭력행위, 정서적 위협,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·편애·왕따 시키는 행위,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등



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처벌

처벌법상

체포/감금(미수), 중체포/감금(미수), 특수체포/감금(미수), 체포감금치상, 협박(미수), 특수협박(미수) 등으로 처리 가능함.

다. 성학대

성학대

-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
-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, 아동을 성적으로 수행하는 행위,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, 성교를 하는 행위,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



-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·성폭행 등의 학대행위
-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·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,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: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

아동복지법상

처벌

처벌법상

강간(미수), 유사강간(미수), 강제추행(미수), 준강간, 미성년자약취/유인, 추행 등 목적 약취/유인, 인신매매 등으로 처리 가능함.

라. 방임·유기

방임·유기

- 물리적 방임 :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,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
- 교육적 방임 :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(의무교육)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
- 의료적 방임 :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
- 유기 :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,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



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처벌

처벌법상

유기, 영아유기, 학대, 아동학사, 유기 치상 등으로 처리 가능함.

3. 아동학대 신고의무

아동학대 신고 의무자	<p>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시민들에게는 신고 의무 부여 “신고의무자들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” *단, 누구든지 신고 가능!</p> <p>- <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> (아동학대 신고 전화 1577 - 3191)</p>
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4. 학부모의 바람직한 태도

내 자녀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과 행동보다는 아이들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대하기 / 가정에서는 귀가 후 아이들의 행방을 반드시 파악 / 가족 또는 친척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가 발견되면 신고하기